

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(안)

의안 번호	2015-119
----------	-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11. .
제 출 자 : 거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거창화강석 신기술지원사업을 통하여 석산·석재가공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가치화와 제품 인지도 증대

2. 출연개요

- 근거법령 : 「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」 제6조 및 9조
- 대 상 : 거창화강석 연구센터(이사장 장민철)
- 사 업 비 : 240백만원(출연 예정금액)

- 2016. 예산편성 요구사항 (단위:백만원)

사업기간	2015년 예산액	2016년 요구액*	재 원 별				
			계	국 비	도 비	군 비	기 타
2016년	150	240	240	120	36	84	-

- 사업내용
 - 석분슬러지 광물화 연구
 - 석재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
 - 석재표면처리기술 응용 및 활성화

3. 부서의견

- 석재산업의 애로사항인 석분슬러지의 처리와 석재표면 처리기술 응용 및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지원사업이 필요함.

4. 참고사항

- 출연 기관현황 : 붙임 1
- 관계 법령 : 붙임 2

[붙임 1] 출자·출연 기관현황

거창화강석 연구센터

설립근거	법률 :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				전화번호 : 055-940-3924		
					홈페이지 : granite.go.kr		
주요연혁	법인허가 : '07. 1. 31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출연기관		
인원현황 (‘15.10.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5명		5명		명		
인 원 (‘15.10.기준)	직 책	성 명	주요경력		임 기		
	이사장	장민철	거창군청(군수 권한대행)				
	상임이사	김건기	(재)거창화강석 연구센터				
	비상임이사	조철효	경남도립거창대학				
		강찬홍	농협중앙회 거창군지부				
		최일수	거창석재조합(주)				
		임진홍	거창석산협회				
		주우일	경남도립거창대학				
		김성호	한국승강기대학				
		홍세선	한국지질자원연구원				
		정창석	거창군청(승강기경제과장)				
	신판성	거창군청(산림녹지과장)					
감 사	이상철	이상철 법률사무소					
주요기능	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	10 (직전연도말 기준)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200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2	2013	2014	재무현황 (백만원) '14.12.31기준	자산	107
	예산액	200	200	200		부채	13
	지자체 지원액	200	200	200		자본	10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'14.12.31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330			290		40	

[붙임 2] 관계법령

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

(제정) 2006.12.12 조례 제1825호
(일부개정) 2008.01.14 조례 제1878호

제1조 (목적)

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8. 1. 14)

제2조 (법인격 및 명칭)

연구센터는 「민법」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,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(이하 “연구센터” 라 한다)라 한다.(개정 2008. 1. 14)

제3조 (사무소)

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4조 (운영 등)

- ① 연구센터의 설립·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「민법」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.(개정 2008. 1. 14)
-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5조 (임원)

-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.
-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6조 (사업)

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안정적인 원석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
2.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
3. 산·학·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
4.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
5.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, 품질 평가 등 사업
6.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기업 등의 위임·위탁사업과 용역사업
7.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
8.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제 7조 (재산조성 및 운영경비)

연구센터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.

1. 정부·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2.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
3. 기타 수입금

제8조 (수익사업)

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.

제9조 (출연금 등의 지원)

-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·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0조 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

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제 11조 (업무의 위탁)

-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-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
제 12조 (보고 및 검사)

군수는 필요한 경우,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 13조 (시행규칙)

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.1.14.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